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0
----------	------

발의년월일 : 2017. 11. 6.

발 의 자 : 김선갑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 김동율 · 김미경 · 박기열 ·
박마루 · 박호근 · 송재형 · 이신혜 ·
장우윤 · 최판술 · 한명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행 서울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연장되거나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의장이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나.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3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 신 설 ></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u>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u>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 ----- <u>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p> <p>⑧ ----- ----- <u>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